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131
----------	------

발의연월일 : 2024. 12. 31.  
발의자 : 이종욱 · 송언석 · 이인선  
박수민 · 박수영 · 신동욱  
이종배 · 박성훈 · 최형두  
성일종 · 송석준 · 김상훈  
김종양 · 구자근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최근 어업분야는 고령화와 신규인력 부족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어업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해외 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어업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안정적 · 장기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적용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